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분야	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1) 대기관리기술사 및 대기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마)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나. 수질 분야	1) 수질관리기술사 및 수질환경기사 각 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토목기사 라)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마)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다. 소음·진동 분야	1) 소음·진동기술사 및 소음·진동기사 각 1명 2) 일반기계기사·건축기사·토목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중 1명

비고

1. 해당 분야 기술사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기관리기술사: 화공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학박사(대기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화공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기계공정설계기술사·공학박사(수질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소음·진동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전자응용기술사·공학박사(소음·진동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소음·

- 진동기사 자격 취득 후 소음·진동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각 분야별로 공통되는 기술인력(수질 분야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기술인력을 포함한다) 중 1명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험기기(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 나. 수소이온농도(pH)
-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마. 부유물질(SS)
- 바. 유류(油類)(동물성·식물성 포함)

비고

1. 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